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경상북도지사

①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확충

②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3]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치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Ⅱ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3)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Ⅰ 상법상 회사·합자회사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Ⅰ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 예) ('25.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5.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예) ('25.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5.1.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6]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 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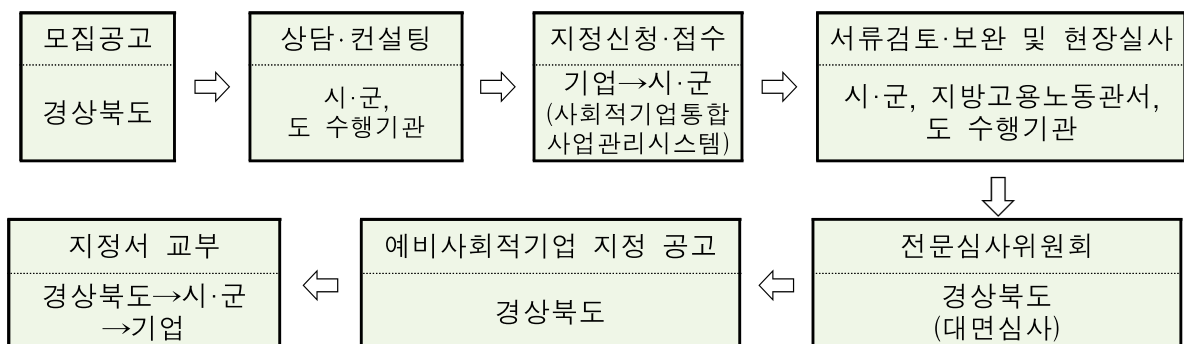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심사일정 등을 이유로 부처형과 중복하여 공고된 경우, 먼저 공고된 지정만 효력이 있으며 같은 날 지정이 된 경우 지정받은 기업이 신청취소공문을 발송하여 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4 지정절차

○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 교육일시 : 2026. 9. 14.(월) 14:00 ~ 16:00
- 교육장소 : 소셜캠퍼스온 경북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6층)
- 신청방법 : 큐알(QR)코드 접속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10.(목) 16:00까지
- 문 의 처 :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5 심사방법

○ 심사대상

- 공고기간 내 접수한 신청기업

- *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 서류심사(요건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 * 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

- 심사 대상 기업 개별통보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각계 전문가(민간전문가, 경영계, 사회적기업가 등) 10인 내외 구성

○ 심사방법 : 대면심사(기업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심사항목 : 사회적가치 추구, 사업목표,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역량

※ 위원별 점수 평균 70점 이상 선정

▶ 주요 심사사항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6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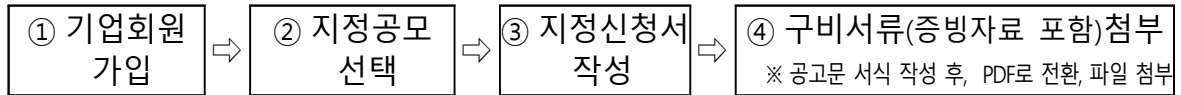
○ 제출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해 업로드)

구분	서류명	비 고
①	■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접 내용 작성
②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③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설립허가증(해당기업)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지점사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고유번호증 불인정)
④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	- 해당기업만 제출
⑤	■ 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26.8.31. 기준)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 7 서식] *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자(만55세 이상)는 증빙 불필요 · 신청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26.6월~8월)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 [발급방법 별첨 참조]	- 유급근로자명부는 <u>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입력</u> * [유급근로자명부] 탭에 개인별 등록
⑥	■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매출장 등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증빙서류 예시 : 매출원장, 계정별 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 영업실적 있는 기업만 제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구비서류 조회·제출 (⑫번 항목과 동일)

구분	서류명	비 고
⑦	■ 정관·규약 등 - 공증 받은 정관 제출 *사회적 목적,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잔여재산의 기부 요건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목적만 해당)	- 비영리조직(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⑧	■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개별 작성
⑨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 8 서식]	
⑩	■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온라인교육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https://edu.seis.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만 인정)	- <u>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u> *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모두 이수
⑪	■ 기타서류 - 대표자 이력서 [서식 1]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서식 2]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장 보유 증명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방법 별첨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는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⑫	■ 원클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 원클릭 구비서류 조화·제출 - 조화가 안되는 경우 직접 등록 (신청일 직전 3개월 기준) *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고유번호증 불인정

7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화) 09:00 ~ 9. 21.(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문의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전산장애로 인한 기간내 미신청시 인정불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 아님, 신청기간 내 입력완료된 접수만 인정
- 지정결과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에 통보(2026. 11월 중) 예정

8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 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 및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054-880-2618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컨설팅 등)은 도 수행기관, 관할 시·군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접수)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270-3923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4
경주시	경제정책과	779-6248	영양군	농촌경제과	680-6323
김천시	경제정책과	420-6445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4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840-5301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370-2235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43	고령군	인구정책실	950-658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42	성주군	기업지원과	930-671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1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47
상주시	인구정책실	537-7142	예천군	지역경제과	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767	봉화군	미래전략과	679-6188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472
의성군	농업정책과	830-6506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790-6272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 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 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 8 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

<별지 제2호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업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㉔[], ㉕[], ㉖[])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 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설머선)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반드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 2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 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별지 제2호의 3 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별지 제2호의 4 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㉓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㉔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㉕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비고
1.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 5 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별지 제2호의 7 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illegible]

※ 작성방법

-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대표자'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1	예시	①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②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③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④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 예 ☐ 아니요
2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 예 ☐ 아니요
2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 예 ☐ 아니요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느냐		☐ 예 ☐ 아니요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2.(), 3.()		☐ 예 ☐ 아니요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느냐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 아니요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느냐		☐ 예 ☐ 아니요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느냐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2.(), 3.()		☐ 예 ☐ 아니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시,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시,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가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서식 1>

대 표 자 이 력 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				
	~				
	~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별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서식 2>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차. 보호종료아동
 -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박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954,704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 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 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 (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 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인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보수정보 간편신고
---------	------	------	-----------	---------	------	-----------

자주 찾는 서비스

토털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보수통액신고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일괄직용사업개시신고	보험료 신고서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예술인·노무제공자 취득신고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의료기관							
최초/의료기관변경 요양신청서		진료계획서/집중재활진료계획서	휴업급여 청구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	공단연계업무처리	산재환자 정보조회	전자통지	진료비/약재비 청구 목록
개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보령료 조회	휴업급여 청구	산재환자 정보조회	One-Click 산재상당 및 신청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심사청구서 작성



2. 사업장명의인증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인원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보수정보 간판신고

정보조회

보험가입정보 조회

보험료정보 조회

요양/보상정보 조회

진료비/약제비정보 조회

원원조회

사무대행업무 조회

일자리지원금 조회

마이데이터 요청 내역 조회

정보조회

정보조회

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

정보조회소개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보험정보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정보 조회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20102)

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4)

물뱀통 이용사업 개시신고 처리 결과 안내

물뱀통 이용사업 개시현황 조회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20103)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조회

사업장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입·이직 신고내역조회(20106)

보험료정보 조회

보험료미납내역 조회(20201)

보험료신고서 조회(20202)

노무제공자 보험료신고현황(20203)

보험료과납내역 조회(20204)

중당반환내역조회(20205)

사업장요율 조회(202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20207)

고액용 징수카드조회(20208)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20209)

3. 화면 맨 위 정보조회 클릭/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정보현황조회 클릭

정보조회

보험가입정보 조회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20102)

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4)

물뱀통 이용사업 개시신고 처리 결과
안내

물뱀통 이용사업 개시현황 조회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20103)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조회

사업장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입·
이직 신고내역조회(20106)

사업장별 학생연구자 현황내역조회

산재보험해외파견자적용현황조회
(20107)

미승인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
(20108)

미승인하수급일용근로자고용정보조회
(20109)

보험료정보 조회

요양/보상정보 조회

일자리지원금 조회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20103)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20103)

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

+ 마이메뉴 추가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본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표시됩니다.
-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근로자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니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전체 근로자 조회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암호화 되어 조회되며, 주민등록번호로 개별근로자 조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험구분을 고용+산재보험으로 조회하여 인쇄할 경우 일부 항목만 인쇄되며, 고용보험 취득신고일 또는 고용보험 적용 및 상실사유를 포함하여 인쇄하고자 할 경우 보험구분을 고용보험으로 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기간은 조회시점에 휴직 상태인 휴직기간이 조회되며, 휴직시작일이나 휴직종료일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근로자의 전체 휴직정보가 조회됩니다.

* 관리번호 *		* 보험구분 *	고용보험
* 주민등록번호		* 고용상태	전체
* 근로자구분	전체	* 보험료부과구분	전체
* 고용일		* 성명	
* 휴직시작일		* 고용종료일	
* 정렬순서	근로자명 ☒ 오름차순 ☐ 내림차순	* 휴직종료일	
* 전근일		*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여부	전체
* 계약직여부	전체	* 조회기간	
* 사업개시번호		* 미승인하수급인관리 번호	

조회

총 조회건 0건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 월평균 보수 포함

역설자점

인쇄하기

4. 관리번호 선택(사업자번호 입력 후 +끝자리 '0 또는 6' 입력)

보험구분은 고용보험으로 선택(필수)/ 맨 아래 조회 클릭

* 다른 사항들은 입력하지 말고 바로 조회 클릭!

→화면 아래 부분에 조회사항 검색되면 월평균 보수 포함 체크/ 인쇄하기 클릭

① 옛지 브라우저에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잘못 인식하여 레포트 인쇄 시 백지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린터를 재설정하거나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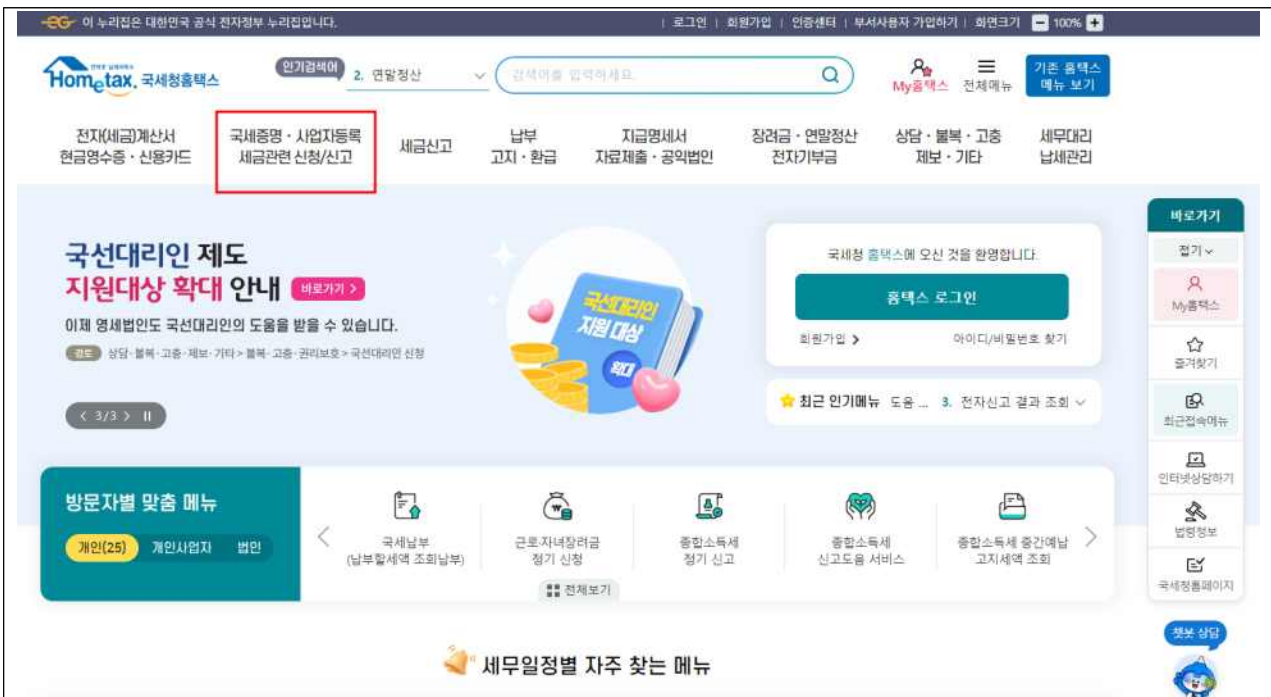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출력일 : 2024-05-08

순번	근로자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고용보험) 취득일	(고용보험) 상실일	(고용보험) 유직시작일	(고용보험) 유직종료일	(고용보험) 전근일	(고용보험) 취득신고일	(고용보험) 고용상태	(고용보험) 직종	(고용보험) 상실사유	(고용보험) 불량판보수	(고용보험) 근로자 원고번호	(고용보험)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이송인 허수금인번호
1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5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6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7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8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9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0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1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2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3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4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5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6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7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8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19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0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1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2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3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4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5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6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7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8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29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0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1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2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3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4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5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6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7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8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39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0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1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2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3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4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5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6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7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8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49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50	일반	1234567890123	김민준	2023-01-01					2023-01-01	고용중	제조업	고용중		2023-01-01		

5. 별도 창이 뜨면 PDF 저장 클릭 후 파일 다운로드

【참고5】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 커서 올리기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사실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폐업사실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정년형 장기집합부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납세증명서(국세환납증명)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턴사업장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휴업사실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연금보험료증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개별소비세·교토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 여부 ·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주특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공동사업자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체납내역	· 대표자등록내역 · 신고사실없음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정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 전용계좌개설여부 · 폐업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기타 민원 증명	· 거주자등명서 발급 신청	·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취업후학자금 상환납부사실증명서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민원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조회)	· 민원서류 발급 제한 및 위변조방지	· 세무서 방문 민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취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공동사업자법인 공동대표 승인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휴폐업재개업 신고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탈납신청/결과조회 · 체납 관련 신청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송달장소 신고/변경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재산·채세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환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각종 특례 신청	· 종합부동산세 분납·납부유예 신청	· 상속증여세 관련 신청·신고

2.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클릭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중사업자등록내역

기본 인적 사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주 소 공개여부

주인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희망수량

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영령(화면조회)

팩스발송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1

매

신청내용

발급유형

사실증명유형

증명발고자 하는 내용

사용용도

제출처

처리완료 SMS수신여부

한글증명

영문증명

사실증명(출사업자등록내역)

위 납세자가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00-00000(상호, 계속(또는 휴·폐업)), 000-00-00000(상호, 계속(또는 휴·폐업)), ...
※ 사업자등록내역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됨 000-00-00000, 000-00-00000, ...
※ 사업자등록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홈텍스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세무서방문발급)

관공서제출용

기타

여

부

※ 처리완료시 문자수신을 원하는 경우 여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신청하기

2. 필수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회원정보조회

로그아웃

인증센터

화면크기

100%

HomeTax 국세청홈텍스

인기검색어

5. 근로장려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My홈텍스

전체메뉴

가장 홈텍스 메뉴 보기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장려금·연말정산

상당·불복·고충

세무대리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자료제출·공익법인

전자기부금

제보·기타

납세관리

My홈텍스

회원정보 관리 >

회원탈퇴 >

전자고지 마일람

세금포인트

세무서 및 연락처

쪽지

최근 접속일시

최근 접속 IP

알림

My홈텍스 방문을 환영합니다.

신고·소득

납부

고지

환급

채납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

민원·상당·불복·고충

민원처리결과 조회

일주일 0건

홈텍스 민원접수 목록 조회

6개월 1건

나의 상담내역

0건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불복청구 진행상황

고충민원 진행상황

3. MY홈텍스 클릭 ▶ 민원·상당·불복·고충 메뉴-홈텍스 민원접수 목록 조회 클릭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접수일자는 1주일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접수일자

2022-10-11



~

2023-04-11



민원사무명

조회하기

총 1 건의 민원신청내역이 있습니다.

번호	민원접수번호	민원사무명	접수방법	처리상태	접수일시	발급 수량	발급번호	증명신청 IP주소	비고
1	515-2023-2-503343462238	사실증명(출사업자등록내역)	인터넷	접수완료	2023-04-11 10:46:16		[안내]	확인	

1

총 1건 (1/1)

- 홀텍스는 시각 장애인분들을 위해 민원증명을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음성변환바코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음성변환바코드 이용 안내 바로가기]**
- 증명서를 열람 또는 출력하려면 <발급번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제우서에서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답제증명서(해외이주용), 사실증명, 거주자증명서 등)은 담당자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My홀텍스와 조회기간이 다르므로 조회되는 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더보기 +

4. 발급번호 생성 후 클릭하여 출력